# [서식 예] 입양취소청구의 소(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부재)

## 소 장

원 고 ○ ○ ○(주민등록번호)

등록기준지: ○○도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)

피 고 1.  $\triangle$   $\triangle$   $\triangle$ (주민등록번호)

등록기준지: ○○도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주소: ○○도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2. △ △ △(주민등록번호)

등록기준지: ○○도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주소: ○○도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### 입양취소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들이 19○○. ○. ○. ○○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파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- 1. 소송 외 xxx는 19○○. ○. ○. 부 □□□, 모 □□□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19○○. ○. ○. 신청 외 ◇◇◇, ◇◇◇의 양자가 되었습니다.
- 2. 하지만 원고는 xxx의 성년 후견인으로서 xxx가 신청 외 ◇◇◇, ◇◇◇의 양

자가 되려면,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

3. 그러나 xxx는 원고의 동의 없이 신청 외 신청 외 ◇◇◇, ◇◇◇의 양자가 된 바, 이는 입양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얻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 입 중 방 법

1. 갑 제1호증 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2호증의 1, 2 각 기본증명서(원, 피고)

1. 갑 제3호증 입양관계증명서

1. 갑 제4호증 주민등록초본(원고, 피고)

## 첨 부 서 류

 1. 위 입증방법
 각 1통

 1. 소장부본
 2통

 1. 납부서
 1통

2000. 0. 0.

위 원 고 ㅇ ㅇ ㅇ (인)

### ㅇㅇ가정법원 귀중

제출법원	양부모 중 1인의 보통 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제 척 기 간 ※ 아래(1)참조
제기권자	<ul> <li>· 미성년자 : 양부모, 양자,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</li> <li>· 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동의없이 양자 : 동의권자</li> <li>·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</li> <li>: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</li> <li>·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자를 하거나 배우자의 동의없이 양자 : 배우자</li> <li>·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: 양친자의 타방</li> <li>·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 :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자</li> </ul>
상 대 방	· 양친자의 일방이 제기하는 소는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고,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함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관련 법 규가사소송법 제30, 31조 민법 제884조 내지 897조
- , - ,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
및 기간	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
비 용	·인지액 : 20,000원(로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
	· 송달료 : 당사자수×3,700원(우편료)×12회분
입양취소 사 유	1. 입양이 제866조, 제869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2호, 제870조제1항, 제871조제1항. 제873조제1항. 제874조를 위반한 때
	2.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
	A. 답중 중시 중인사기 글중에게 되할 거나 중에인 사비가 찌급할 말   지 못한 때
	3.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

#### ※(1) 제 척 기 간

- 1. 미성년자가 한 입양은 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
- 2.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양자가 된 경우는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
- 3.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 내
- 4.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없는 양자와 부부공동입양에 위반한 양자는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
- 5. 양친자의 일방에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양자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
- 6.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양자는 그 사유를 안 날로 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.